

예 23 가

기관장	인사	신라번호	341	공보	필요	불필요
보입담당	인사	과장	내무	부장	서	1부시장
시	법	시정	과장	보	관	
시	법	회계	과장	제	무	국
연월일	1964. 8. 11.	연월일	1964. 8. 2.	등록	번호	123456
분류기호	서내인		(2.4086)	관		
경수	수	심	서	장	발	신
장	소	장	소	장	소	장
제	목	회계장 공무원의 임면사무 위임				

회 시
인 사
부 장

1. 행정사무 간소와의 일환으로 다음의 회계장 공무원에 대한 임면사무를 위임하오니 사부 **예** 기 하시기 바랍니다.

2. 위임규정

가. 마부서 소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면 및 임면제정에 관한 사무를 소속 국장에게 위임한다.

나.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일체의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소속 국장에게 위임한다.

다. 전 "가" "나" 항의 위임된 사항을 행할 때는 회계과장 ^{에게} 의 함의를 ^받 두어야 한다.

마. 회계장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는 별지 (1) 와 같은

발령비장을 비치시켜야 한다.

별지 1

소 속 직 급 성 명 발령 사 항 발령일자 비 고

(한 2)

수신 부서

발신 서울특별시

제 유 등 인

1. 마출과 같이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에 대한 취업규정이
제정되었기 불지함.

2. 취업규정 (원안이기 시행할것) "끝"

수신처 :

서실 4, 5 서과 1-34

1-2

서울특별시 제부회계규칙

제 3조 2항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

에 있어서는 따로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, 청소에 있어서는 청

소의 장이 이를 임명할수 있다.

다만, 물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임명한다.